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0 - 130
----------	------------

제출일자 : 2020.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다. 시설현황

시설용량	처리방법	위탁기간	연면적	운영업체	비고
30톤/일	열분해 가스화방식	2018. 1. 1.~ 2020.12.31.(3년)	1,855㎡ (3층,철골)	〈공동수급〉 환경시설관리(주), 화성종합건설(주)	관리인력 18명

라. 위탁대상 사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24시간 운영)
- 소각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내 배출
- 소각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관련 업무
- 안전관리 및 내구연수 증대 방안 도출

마. 위탁기간 : 2021. 1. ~ (5년 이내)

※ 기존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바. 계약갱신 근거 및 검토결과

-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소각장포함)운영 관리대행 사업 협약서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 변경)
 -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갱신 가능
- 현 수탁업체를 갱신하여 운영할 경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토대로 다음사항이 용이함.
 - 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 대처 가능
 -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32개항목) 준수 등 법적 관리 대응능력이 유리함.
 -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관리가 용이함.
 - 시설운영관리 전반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사. 위탁업체 선정 : 기존 수탁업체(공동수급)와의 '계약갱신'

아. 소요예산 : 1,796백만원 정도/년

자. 향후계획

- 2020. 12.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21. 1. : 시설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